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평창

2017년 9월 1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14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9. 14.(목)	담당부서	산업기술개발과
담당과장	김홍주 과장(044-203-4520)	담 당 자	조원철 사무관(044-203-4526)

연구자 중심의 R&D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

- 성실하게 수행한 도전적 R&D는 실패책임 완화
- 반복적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 강화 (5년→최대 10년)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**연구자 중심**의 **연구 환경**을 **조성**하고 **연구 책임성 강화**를 위해 **산업기술혁신촉진법**(이하 "산촉법") 및 **동 법 시행령**을 개정하고 **9월 15일부터 시행**한다.

1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산촉법과 시행령에 **연구자**의 **도전적 목표 설정**에 대한 **부담**을 **경감**시켜주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.

○ 이에 따라, **도전적 목표**를 설정하고 **성실하게 연구**를 **수행**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중단·실패 판정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기간, 사업비 환수 등의 **제재 조치**를 **감면***할 수 있도록 했다.

* (감면기준)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고,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거나,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

2 한편, 연구자가 **반복적**으로 범하는 **연구부정 행위**에 대한 **제재**를 **강화**하는 내용도 산촉법 및 시행령에 포함시켰다.

○ 과거에는 연구자가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의 **동일한 부정 행위**를 **수차례 반복**해도 **최대 5년**까지만 국가 R&D **참여**를 **제한**했으나,

- 앞으로는 **'연구비 용도 외 사용', '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', '연구내용 누설·유출'**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**반복**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**최대 10년**까지 **참여 제한**이 가능하도록 했다(별첨)

* 예시)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참여제한기간
(개정前)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5년 → (개정後) 1회 위반 5년, 2회 위반 7년6월, 3회 이상 위반 10년

○ 또한, 과거에는 **동일한 R&D 과제 수행** 과정에서 **2개 이상**의 **연구부정 행위**를 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을 **최대 5년***까지만 **합산**했으나,

* 예) 동일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유용 + 연구결과 표절을 한 경우,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기한은 각각 5년, 3년이지만 참여제한 합산기간은 8년이 아닌 5년

- 앞으로는 **연구비 용도 외 사용,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, 연구 내용 누설·유출** 등 **3개**의 중대 위반 **연구부정 행위**에 대해서는 **과거**에 이미 **참여제한**을 **받은 경우**에 **최대 10년까지 합산**이 가능하도록 했다.

□ 산업부 관계자는 "이번 법·시행령 개정으로 **도전적 목표**를 가지고 성실히 **연구**를 **수행**할 수 있는 **환경**을 **조성**함과 동시에 연구비 부정사용 등 **부정행위**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**제재 조치**를 **강화**함으로써 연개개발(R&D) 성과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."라고 말하고,

○ 앞으로 **연구자 중심**의 **연구 환경 조성**과 **책임성 강화**를 위해 산·학·연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**의견수렴**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**제도개선**을 추진하기로 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조원철 사무관(☎ 044-203-45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(시행령 별표1)**

참여제한 사유		근거 법조문	참여제한 기간		
	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1)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내용을 국내로 누설(漏泄)하거나 유출한 경우		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	2년	3년	4년
2)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내용을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			5년	7년 6개월	10년
3)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	가)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	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	3년 이내	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	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
	나)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		4년 이내	4년 초과 6년 이내	6년 초과 8년 이내
	다)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		5년 이내	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	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
	라) 가)부터 다)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		5년	7년 6개월	10년
4)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·변조·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		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	3년 이내	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	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
5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		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3	3년 이내	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	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

* 개정 前 시행령은 개정 시행령의 1회 위반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설정